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5호
----------	--------

제출년월일 2024. 8.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법과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대형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화재안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가장 등)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우선 지원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반영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7. 16. ~ 8. 5.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나) 경 기 도 : 생활안전담당관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김포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로 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김포시장” 을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후 주택” 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
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제3조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
안전취약가구 등의” 를 “시장은” 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 을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김포시민(이하
“시민” 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 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를 “**김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에 대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 및 제1항(중
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선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을 “주택용” 으로,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을 “별지 서식의” 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안전담당관 김 광 식
	팀 장 직위·성명	재난대응팀장 연 규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조 원 희(☎291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김포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p> <p>가. ~ 마. (생략)</p> <p>바.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p> <p>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소화기</p> <p>나. 단독경보형 감지기</p>	<p>제2조(정의) ----- -----</p> <p>1. -----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p> <p>2. “노후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p>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 ----- -----</p>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

-----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 김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5조(우선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

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주택용 -----

----- 별지 서식의 -----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원수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관계인()			
주택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우선지원해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가장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노후 주택 거주				
지원요청시설	<input type="checkbox"/> 소화기(세대별, 층별) <input type="checkbox"/>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김포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김포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 바.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화기
 -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
 - 화재안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가장 등)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담당관 김광식 팀장 연규환